



보도시점 (전매체) 7.2(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이다.

*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24.1.9.공포, 7.10.시행 (백년소상공인 지정 등) '24.1.16 공포, 7.17.시행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하여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보험료 지원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백년소상공인 제도’는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백년이상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법적근거 부재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세부 지정요건과 포상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 등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승계시 ‘동일성 유지’ 판단 기준 신설

소상공인이 사업승계에 따른 영업 계속유지의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승계 전·후 같은 업종(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종사하고, 승계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② 백년소상공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 및 지정의 취소 사유 신설

소상공인이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동일업종(세분류)을 계속(제조업15년, 비제조업 30년) 영위하고, ▲시장성, 기술성, 자재권, 인지도 등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과 ▲장기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거나, 고액·상습체납자, 체불사업주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③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기준·방법·절차 규정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은 장기고용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오영주 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은 오랜 전통과 성장성을 가진 우수 소상공인의 블로델로서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백년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의 대표브랜드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상권 및 글로벌화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지역상권과	책임자	과장	김윤우 (044-204-7880)
		담당자	사무관	공윤 (044-204-7280)
		담당자	주무관	김한우리 (044-204-7868)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	책임자	과장	장상만 (044-204-7850)
		담당자	사무관	김동철 (044-204-785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책임자	과장	신훈목 (032-450-1151)
		담당자	주무관	허준 (032-450-114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 1**소상공인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주요내용)**

현 행	개정안
<u><신 설></u>	<p><u>제2조(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요건) 소상공인으로부터 영업상의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자가 영업상의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업종</u>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전받은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p>
<u>제4조의14(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u>	<p><u>제4조의14(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①</u>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 ----- --. ②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p>
<u><신 설></u>	

<신 설>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5조의6(백년소상공인의 요건) ① 법인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소공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소공인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② 법인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소상공인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인 소공인 또는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인 소상공인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을 법인인 소상공인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본다.

1.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2.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 관련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고,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과 관련된 부채를 법인이 모두 인수하였을 것

④ 소상공인등이 법인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본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 해당 기간 동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 중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의 중단이 없을 것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신뢰성

2.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3.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4.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등에 대한 인지도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장기 고용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3.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

<p><u><신 설></u></p>	<p>항 외에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백년소상공인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u>제5조의7(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의2제2항의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나.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3. 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p><u>제5조의8(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①</u>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2</p>
---------------------------	---

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6제5항 각 호의 실적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의 방법 및 절차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정부 표창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2

백년소상공인 지원 개요

□ 사업목적

-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백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성공모델 확산

* (경과) ('18~'20년) 법적 근거없이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 → ('21년) 예산 반영 → ('24.1월)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24.7.17 시행)

□ 지원대상

- (백년가게) 업력 30년 이상 우수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유효기간 5년)
- (백년소공인) 업력 15년 이상 숙련소공인(제조업)(유효기간 5년)

□ 지원내용

- (선정·홍보) 인증서·현판, 스토리보드 제공, 온·오프라인 종합홍보 등
- (컨설팅·판로) 경영, 가업승계, 마케팅 등 맞춤형 컨설팅 및 판로 지원
* 중기부 타 소상공인 지원사업(혁신성장자금, 소상공인 판로개척, 스마트제조 등 7개) 연계 가점, 별도트랙 등 우대 지원
- (전용매장 운영) 인천공항 밀키트 전용 판매장 2개소 운영

□ 선정현황 : 백년가게 1,369개사, 백년소공인 956개사('24.6월 기준)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백년가게	71	204	339	439	230	86	1,369
백년소공인	-	-	339	390	175	52	956
합계	71	204	678	829	405	138	2,325

① 중 · 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제도 [고용부 소관]

- 실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 사업주(무보수 가족종사자 포함) 등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시행 '00.7.1~)
 - * 관련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 **가입대상(임의가입)** :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와 그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 친족
 - ①보험가입자로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②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③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 적용제외 : 농·임·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요리사·가정부·보모 등) / 선원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등
- **보험료** : 사업주가 선택한 등급의 '보수액(월)' × 보험료율(0.5%~18.5%, 업종별 상이)
 - (단위 : 천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보수액(월)	2,405	2,889	3,373	3,857	4,340	4,824	5,308	5,792	6,275	6,759	7,243	7,727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② 중 · 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중기부 소관]

- **(사업목적)** 소상공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 가입을 유도·활성화하여,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추진경과)** 산재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개정 (공포) '24.1.9, (시행) 7.10
-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요예산)** '25년 보험료 지원예산 확보위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